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4,087,568	19,922,627
일반회계	575,653,703	17,269,611
특별회계	88,433,865	2,653,016
공기업특별회계	67,019,275	2,010,57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266,995	818,01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9,752,280	1,192,568
기타특별회계	21,414,590	642,438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8,867,337	266,020
의료급여특별회계	234,710	7,041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00,767	12,023
대지등보상특별회계	4,103,000	123,09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558,142	196,74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209,942	6,2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9,300	1,179
기업유치세수농업환경특별회계	1,001,392	30,04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08,850천원(일반예비비 2,508,85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